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개선·보완할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도모
- 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포상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도 제고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안 제14조제2항,제3항)
- 나. 위원 모집 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 근거(안 제14조제4항 후단 신설)
- 다. 제도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안 제26조 신설)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9조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3)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13조
- 2)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나. 예산조치: 2024년 본예산 편성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3. 9. 27. ~ 10. 17.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5)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로,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 중 “예산과정의”를 “예산과정에”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으로,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을 “예산편성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4조 중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을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

다.

제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으로 한다.

제6조 중 “예산편성방향”을 “예산편성 방향”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구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의견수렴 절차 등)”을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견수렴을”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을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로, “통하여”를 “통하여 주민의”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으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을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구”로 한다.

제11조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원칙)”을 “(위원회 운영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복리증진”을 “복리 증진”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9

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선순위”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를 “위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을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되”를 “하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임”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을 “경우에는 임기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의”를 “제2조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원회 업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의견청취)”를 “(의견 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을 출석시켜”를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을 출석하게 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민참여방법”을 “주민참여 방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주민참여 등 홍보)”를 “(주민참여 활성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 주민참여”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구성 및 운영)”을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를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적극”을 “적극적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주민”을 “지역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결”을 “심의·의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회의소집 및 의결)”을 “(회의 소집 및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요시 주민”을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재정 및 실무지원 등)”을 “(재정 및 실무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처리”를 “사무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비”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u>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지방자치법」</u>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p>1. <u>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u></p> <p>2. <u>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u></p> <p>3. <u>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u></p> <p>② “주민참여예산”이란 <u>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u>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u>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p> <p>----- <u>「지방자치법」</u> 제47조-----</p> <p>-----.</p> <p>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u>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u></p> <p>나. <u>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u></p> <p>다. <u>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u></p> <p>2. “주민참여예산”이란 <u>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u></p>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
----- 예산과정에 -----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 예산편성과 관련된 -----

--.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

제5조(주민의 권리) -----
----- 범위-----

-----.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 예산편성 방향-----
----- 주민의견 수렴 ----

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

----- 구 홈페이지
등-----
-----.

제7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 의견을 수렴하기 -

-----.

②----- 필요한 경우 주요사
업에 대해 -----
----- 통하여 주
민의 -----.

제8조(의견제출) -----

-----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제9조(결과 공개) -----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를 구 -----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

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 4. (생략)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4. (생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

제12조(위원회 운영 원칙) -----

-----.

1. ----- 복리 증진 -----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

3. -----

-----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및 -----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 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 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등에 -----

④ -----

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 하되, -----

----- 해촉 -----

-----.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 7. (생략)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2. (생략)

3.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② (생략)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② ----- 위원-----

-----경우에는 임기 중-----

1. 제2조제1호에 따른 -----

2. ~ 7. (현행과 같음)

제16조(직무) ① -----

-----위원회의 업무-----

② -----

-----수행할-----

제17조(회의) ① -----

1.·2. (현행과 같음)

3. ----- 의견 수렴-----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견 청취) -----

-----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 -----

등을 출석하게 하여 -----

있다.

제20조(주민예산학교) ① (생략)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생략)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

제20조(주민예산학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민참여 방법-----
-----.

제21조(주민참여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
-----.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2조(설치 및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분의 1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후단 삭제>

다.

⑥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생략)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구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생략)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

⑥ -----
----- 적극
적으로 -----.

제23조(기능) -----
-----.

1. -----
-- 지역주민-----
2. -----
----- 심의·의결
3. (현행과 같음)

제24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재정 및 실무 지원 등) ①

----- 사무 처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여비, 그 밖
에 필요한 경비-----
-----.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 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나. 그 밖의 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인한 위원회 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기획예산실장 정 기 현